# 제303회 임시회 <br> 2011.09.30.(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충 청 북도 의 회
교 육 위 원 회

$$
\begin{array}{r}
\text {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 \\
\text { 심 사 보 고 서 } \\
\\
\end{array}
$$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장병학 교육의원외 6 인
나. 발의일자 : 2011년 09월 09일
다. 회부일자 : 2011년 09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09월 21일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희 제 1 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O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장병학 교육의원)
가. 제안이유
학교의 독서교육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 향상과 풍부한 정서 함양 및 건전한 독서교육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안 제3조)
O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안 제4조)
O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독서활동지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O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에게 연구비 지 원 및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안 제7조)
0 독서행사 실시 및 독서지도 유공자 표창(안 제8조)
O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안 제9조)
○ 학교도서관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안 제10조)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왕년)
○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평생 교육 의 바탕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임.

0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 1 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 2 조 에는 "정의"를, 안 제 3 조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 4 조에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규정을 두었으나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표 $1>$ 과 같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이를 대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은 적절하다고 할 것임.
<표 1>
(학교도서관운영,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현황
(단위: 기관)

| 구 분 | 표본조사 <br> 학 교 수 | 학교도서관 <br> 운영위원회설치 | 학교교육과정 <br> 위원회 설치 | 비 고 |
| :---: | :---: | :---: | :---: | :---: |
| 초등학교 | 5 | 5 | 5 |  |
| 중 학 교 | 5 | 5 | 5 |  |
| 고등학교 | 5 | 5 | 5 |  |
| 합 계 | 15 | 15 | 15 |  |

※ 도내 초•중•고 무작위 표본 조사(2011. 8월)
○ 안 제5조에 심도 있는 독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독서교육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 학교의 장의 "독서활동지도" 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비 및 관계자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연구비 지원 등"의 규정을 둔 것은 독서교육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타당한 규정이라 생각됨.

○ 안 제8조에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계자 및 학생에게 포상, 표창,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9조에 "공공도관과의 협력", 안 제 10 조에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안 제 11 조에 "행정상•재정상의 조치"규정을 두어 유관 기관간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학교의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 등을 통해 독서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O 다만, 도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독서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이 <표 $2>$ 와 같이 $35.2 \%$ 로 미흡한 실정인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2>

## 초•중•고등학교 사서(보조)교사 배치 현황

2011.8.31.현재
(단위: 명)

| 구 분 | 학교수 <br> (A) | 사서교사 | 사 서 <br> 보조교사 | 합 계 <br> (B) | 확보비율 <br> (B/A) | 비 고 |
| :--- | :---: | :---: | :---: | :---: | ---: | :---: |
| 초등학교 | 260 | 10 | 88 | 98 | $37.7 \%$ | 국립제외 |
| 중 학 교 | 131 | 8 | 34 | 42 | $32 \%$ | " |
| 고등학교 | 83 | 3 | 24 | 27 | $32.5 \%$ | " |
| 합 계 | 474 | 21 | 146 | 167 | $35.2 \%$ |  |

※ 자료: 충청북도교육청(증등교육과)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제 1 조（목적）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 10 조，「학교도서관진흥법」제 15 조 및 같은 법 시행렴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 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 독서태도，지식，기술，흥미，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 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과정상 의 활동을 말한다．

2．＂학교＂란 「유아교육법」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퐌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 다）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1）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거나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 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2）독서교육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亏조（독서교육 전담부서）교육감은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독서활동지도）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생활을 활성 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비지원 둥）（1）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2）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둥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독서 행사）（1）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 활화 등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할 수 있다．
（2）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 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독서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도서관과의 협력)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 10 조(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1)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학교도서콴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 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 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훙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발 췌

## $\square$ 독서문화진훙법 제 10 조(학교의 독서 진훙)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항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욱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3) 하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 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 명 이상 둘 수 있다.

## $\square$ 학교도서관진훙법 제15조(독서교육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square$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9조(독서교육 등)
제 9 조(독서교육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 15 조제 1 항 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 상항
2. 학생들의 독서수준
3.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